

고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

(의안번호 제53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5. 28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6. 2
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1999. 6. 22

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- 0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청구권자의 범위 등 일부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고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존치는 불필요한 사항을 폐지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0 상위법의 명확한 규정
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공개청구권자 및 그 절차, 공개비용 등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업무를 수행함에 별도로 조례를 규정함이 불필요함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0 본 폐지 조례안은 충주시 의회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조례안의 확정계기로 1993. 7. 20 훈령에 의거 제정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으로
- 0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(법률 제5242호, 1996.12.31)이 제정됨에 따라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며,
- 0 또한 상위 법률안에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조례를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1999. 6. 2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